영등포구의회
제21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 미 영 의원 발의】

2018. 10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0호로 2018년 10월 12일 박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영등포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조성하고자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다.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라. 아동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9조)

마.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
바. 아동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~제12조)

사.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13조~제14조)

아.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15조~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「아동복지법」,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반영 필요.

다. 입법예고(2018. 10. 5. ~ 10. 11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「아동복지법」및「유엔 아동권리협약」에 따라 영등포구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총 2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❍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~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- 안 제4조~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6조~제9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,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,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교육·여가·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
-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11조~제12조에서는 아동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13조~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
- 안 제15조~제21조에서는 구의 아동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,

기타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원하여 관내 아동 3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❍ 서울시 자치구중 18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였고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의 '아동친화도시' 인증을 받은 자치구는 11개구[1]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에는 '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축'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음.

❍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「아동복지법」및 「유엔 아동권리협약」의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보장 등 기본정신 실천을 통하여 우리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치구 (18년 9월 기준)
성북구(13.11), 도봉구(16.11), 송파구(16.12), 강동구(17.3), 종로구(17.8), 강서구(17.12), 노원구(18.2), 성동구(18.2), 광진구(18.3), 서대문구(18.5), 강북구(18.9)

참 고 자 료

■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

- **생존권:**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,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,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,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
- **보호권:**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, 차별, 폭력, 고문, 징집, 부당한 형사처벌, 과도한 노동,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**발달권**: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. 교육받을 권리, 여가를 즐길 권리,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,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
- **참여권**: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. 표현의 자유, 양심과 종교의 자유,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,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,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

■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■

- **무차별의 원칙**: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, 인종, 국적,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됨
- **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**: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
- **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:**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아동 의견 존중 원칙**: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,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함

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

1. **아동의 참여 보장:**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 듣고 고려해야 함
2. **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:**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함
3. **아동권리 전략 개발:** UN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됨
4. **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:**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됨
5. **아동영향 평가 실시:** 정책과 조례,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해야 됨
6. **아동관련 예산의 확보:**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,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됨
7. **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:**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관련 자료 수집해야 됨
8. **아동권리 홍보:**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
9. **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운영:**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됨
10. **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:**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고 시행해야 됨

관 련 법 령

■『아동복지법』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28.>